

## ■ 최신 판례 ■

**노조원이 다수인 사업부문을 선별적으로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, 소속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라는 사례**

[대상판결 : 서울행정법원 2019. 6. 20. 선고 2018구합85204 판결]

이광선 변호사 | 신혜주 변호사

노조원이 다수인 사업부문을 선별적으로 다른 회사에 양도하고, 소속 근로자를 정리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서울행정법원 판결입니다.

Y 회사는 2012년 설립되어 250개 객실 규모의 H 호텔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. 이 회사에는 식음팀과 조리팀을 두고 있었으며, 이 팀의 근로자들은 호텔 레스토랑 바, 뷔페에서 음식 조리나 서빙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. 그런데 호텔 측은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다른 회사에 식음·조리부문을 양도하는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했고, 해당 부문에서 종사하는 A 씨 등에게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.

대상판결에서는 A 씨 등에 대한 해고가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었는지,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가 문제 되었습니다.

법원은 A 씨 등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4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 먼저 Y 회사가 H 호텔의 경영 악화를 피하기 위하여 이 사건 영업양도 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었다거나, 고용승계를 거부한 근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를 하기에 이를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. Y 회사가 식음·조리부문 양도에 관한 이사회 및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고도 새로 조리사를 채용한 점 등을 고려하면, Y 회사가 이 사건 해고에 이르기에 앞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.

이어서 부당노동행위 성립 여부에 대하여, 노조를 조직하는 데 적극적인 근로자들이 다수 근무하는  
식음·조리부문 영업을 양도한 것은 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호 및 제4호에서 말하는 부당노동행위에  
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.